

1. 개정이유

일반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내진(耐震)설계를 하여 설치하나, 이보다 위험도가 높은 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다툼이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내진설계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한 사항을 수검대상의 관계인에게만 통보하도록 한 결과 관계인의 개선 노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부적합한 사항을 통보하는 대상에 소방서장을 추가하며, 자동차의 충돌로부터 이송취급소의 배관 및 그 지지물을 보호하는 설비의 기술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해당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시설의 소방시설 내진설계 의무 명시(안 제46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상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준용하는 규정 신설

나. 관계인의 정기검사 부적합 사항 개선 이행력 제고(안 제71조제5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중 부적합 사항을 통보하는 대상에 수검대상의 관계인 외 소방서장을 추가함

다. 자동차 충돌대비 이송취급소의 보호설비 기준 구체화(안 별표 15)

이송취급소의 배관 및 그 지지물을 자동차의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설

비의 기준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임을 고려할 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위임규정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크롬”을 “크로뮴”으로, “요오드”를 “아이오딘”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할로젠간화합물”을 “할로젠간 화합물”로 한다.

1. 과아이오딘산염류
2. 과아이오딘산
6.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

제6조제7호 중 “원통종형식”을 “원통세로형식”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22조제1항제2호”를 “(영 제22조제2항제2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을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이”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을 “(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으로 하고,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기준(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8조 중 “염소산염류 · 과염소산염류 · 질산염류 · 유황 ·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 질산에스테르류 · 니트로화합물”을 “염소산염류 · 과염소산염류 · 질산염류 · 황 ·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 질산에스테르류 · 나이트로화합물”로 한다.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4일 전”을 “1일 전”으로 한다.

제71조제5항 중 “신청자”를 “신청자 및 소방서장”으로 한다.

별표 4 II 제2호나목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표 IV 제4호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갑종방화문을”을 “60분방화문을”로 하며, 같은 표 X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액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

나. 기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1배 이상

별표 4 XI 제4호 중 “을종방화문 · 갑종방화문”을 “30분방화문 · 60분방화문”으로, “갑종방화문을”을 “60분방화문을”로 하고, 같은 표 XII 제1호나목 중 “아세트알데히드 · 산화프로필렌”을 “아세트알데하이드 · 산화프로필렌”으로,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히드록실아민 · 히드록실아민염류”를 “하이드록실아민 · 하이드록실아민염류”로, ““히드록실아민등””을 ““하이드록실아민

등”으로 하고, 같은 표 XIII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다목 본문 중 “아세트알데히드”를 각각 “아세트알데하이드”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도는”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아세트알데히드”를 “아세트알데하이드”로 한다.

별표 4 XIII 제3호마목 중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으로 하고, 같은 XIII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히드록실아민”을 각각 “하이드록실아민”으로 하며, 같은 목 중 “히드록실아민등”을 “하이드록실아민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도는”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목 1) 및 2)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같은 2) 중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 하는”을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히드록실아민등을”을 “하이드록실아민등을”로 한다.

별표 4 XIII 제4호다목 중 “히드록실아민등의”를 “하이드록실아민등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히드록실아민”을 “하이드록실아민”으로, “철이온”을 “철 이온”으로 한다.

별표 4 부표 제2호다목 제조소 · 일반취급소 · 옥내저장소의 제조소등의 높이(a)의 비고란 중 “갑종방화문”을 각각 “60+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목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란 중 “을종방화문”을 “30분방화문”으로,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4 부표 제2호라목1) 중 “당해 제조소등의”를 “해당 제조소등이”로

하고, 같은 목 2) 및 3) 중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를 각각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5 I 제1호다목2) 및 같은 I 제5호나목 중 “갑종방화문”을 각각 “6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I 제6호가목4) 중 “질산에스테르류”를 “질산에스터류”로 하며, 같은 I 제9호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갑종방화문을”을 “60분방화문을”로 하고, 같은 표 II 제4호 단서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표 III 제5호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표 IV 제1호라목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표 V 제1호라목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5 VIII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위험물중”을 “위험물 중”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히드록실아민등”을 “하이드록실아민등”으로 하고, 같은 VIII 제2호다목4)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VIII 제4호 중 “히드록실아민등을”을 “하이드록실아민등을”로, “히드록실아민등의”를 “하이드록실아민등의”로 한다.

별표 6 VI 제10호바목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표 X 라목 2) 본문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X 바목 중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으로 하고, 같은 X 나목제2호 중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하며, 같은 X 나목제3호 및 같은 X 가목 중 “히드록실아민등”을 각각 “하이드록실아민등”으로 하고, 같은 X 나목 중 “철이온”을 “철 이온”으로 한다.

별표 7 I 제1호더목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갑종방화문을”을 “60분방화문을”로 하고, 같은 I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황화린·적린”을 “황화인·적린”으로, “유황”을 “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후단 중 “황화린·적린”을 “황화인·적린”으로, “유황”을 “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다) 단서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7 I 제2호다목1)라) 본문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라) 단서 중 “을종방화문”을 “30분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표 II 중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으로, 같은 II 중 “아세트알데히드등의”를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로, 같은 II 중 “히드록실아민등의”를 “하이드록실아민등의”로 한다.

별표 8 I 제7호가목4) 후단 중 “헤시안클래스”를 “헤시안클로스”로 하고, 같은 표 II 제3호 나목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란 중 “것중”을 “것 중”으로 하며, 같은 란의 수지란 중 “(섬유강화플라스틱용액상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UP-CM”를 “(섬유강화플라스틱용액상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UP-CM”로, 같은 란 중 “비닐에스테르수지”를 “바이닐

에스터수지”로 하며, 같은 표 IV 제1호 중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I 내지 III의”를 “I 부터 III까지의”로 하고, 같은 IV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세트알데히드”를 “아세트알데하이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아세트알데히드등”을 각각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하고, 같은 IV 제3호 중 “히드록실아민등”을 각각 “하이드록실아민등”으로 한다.

별표 10 X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세트알데히드”를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X 제3호 중 “히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로, “히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를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로 한다.

별표 11 I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황만”을 “황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마목 중 “유황이”를 각각 “황이”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유황을”을 “황을”로 한다.

별표 13 VI 제1호아목5)나)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표 VII 제2호 나목4) 중 “폴리비닐부티랄”을 “폴리바이닐뷰티랄”로 하며, 같은 표 IX 라목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14 I 제1호바목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4)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I 제2호다목 및 라목 본문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각각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15 III 제5호마목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호설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충격강도의 계산방법에 따른 충격강도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별표 15 IV 제23호라목2)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16 I 제2호마목 중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으로 하고, 같은 I 제4호 중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히드록실아민”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하이드록실아민”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를 “제1호에 따르되, 해당”으로, “제XII의 규정에 의하여야”를 “XII에 따라야”로 하며, 같은 표 II 제4호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표 III 제2호 나목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당해 설비로부터”를 “해당 설비로부터”로,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당해 설비에서 당해”를 “해당 설비에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표 IV 제2호 가목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당해 설비로부터”를 “해당 설비로부터”로 한다.

별표 16 IV 제2호가목 단서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당해 설비에서 당해”를 “해당 설비에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표 V 제2호가목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당해 설비로부터”를 “해당 설비로부터”로,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당해 설비에서 당해”를 “해당 설비에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V 제3호사목 단서 중 “당해 설비로부터”를 “해당 설비로부터”로,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당해 설비에서 당해”를 “해당 설비에서 해당”으로 하며, 같은 표 VI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를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표 VII 제11호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16 VIII 제1호다목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갑종방화문을”을 “60분방화문을”로 하고, 같은 VIII 제3호가목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당해 설비로부터”를 “해당 설비로부터”로,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당해 설비에서 당해”를 “해당 설비에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표 IX 제2호가목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당해 설비로부터”를 “해당 설비로부터”로,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16 IX 제2호가목 단서 중 “당해 설비에서 당해”를 “해당 설비에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표 X의2 제2호나목 중 “갑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으로 하고,

문”으로 하며, 같은 표 XI 제2호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3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표 XII 제2호 중 “아세트알데히드”를 “아세트알데하이드”로 하며, 같은 XII 제3호 중 “XII제4호의 규정은 히드록실아민”을 “XII제4호는 하이드록실아민”으로 한다.

별표 17 I 제1호가목의 옥외 저장소 중 “유황을”을 “황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옥외 탱크 저장소의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중 “유황만”을 “황만”으로 하며, 같은 목 옥내 탱크 저장소 중 “유황만”을 “황만”으로 하고, 같은 목 암반 탱크 저장소 중 “유황만”을 “황만”으로 하며, 같은 I 제2호가목 옥외저장소의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란 중 “유황을”을 “황을”로 하고, 같은 I 제3호가목 옥외저장소의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란 중 “유황을”을 “황을”으로, “유황외의”를 “황 외의”로 한다.

별표 17 I 제3호나목의 이동탱크저장소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란 중 “일브롬화일염화이플루오르화메탄”을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으로, “일브롬화삼플루오르화메탄”을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으로 “이브롬화사플루오르화메탄”을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메탄”으로 하고, 같은 I 제4호의 소화설비의 구분란 중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로, “할로젠화합물소화기”를 “할로젠화합물소화기”로 한다.

별표 17 I 제5호 차목1) 본문 중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을 “60분방화문, 30분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8 III 제4호 단서 중 “덩어리상태의 유황”을 “덩어리 상태의 황”으로 하고, 같은 III 제20호 중 “유황을 용기”를 “황을 용기”로, “유황을 경계표시”를 “황을 경계표시”로, “유황이”를 “황이”로 하며, 같은 III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디에틸에테르등(디에틸에테르)”를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다이에틸에터등(다이에틸에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출에”를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취출에”로,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출이나”를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취출이나”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아세트알데히드”를 각각 “아세트알데하이드”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디에틸에테르등 또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을 “다이에틸에터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디에틸에테르등에”를 “다이에틸에터등에”로, “아세트알데히드 또는”을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및 자목 중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을 각각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으로 한다.

별표 18 III 제21호차목 중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으로 하고, 같은 표 IV 제5호 바목1) 중 “유황”을 “황”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1) 본문 및 같은 목 3) 중 “탱크에”를 각각 “탱크(이동저장탱크를 제외한다)에”로 하며, 같은 목

4)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으로 한다.

별표 18 IV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아세트알데히드등의”를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로,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를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로, “아세트알데히드”를 “아세트알데하이드”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아세트알데히드등의”를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로, “아세트알데히드등을”을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로 한다.

별표 19 II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유황을”을 “황을”로 하고, 같은 표 V 제1호라목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을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로 하며, 같은 V 제2호가목 중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를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황화린, 적린, 유황”을 “황화인, 적린, 황”으로 한다.

별표 23의 할로젠화합물 방사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란 중 “할로젠화합물”을 각각 “할로젠화합물”로 하고, 같은 표의 제독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란 중 “가성소오다”를 “가성소다”로 한다.

별표 24 제1호의 실무교육의 안전관리자의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간란 및 같은 란의 위험물운송자의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간란 중 “8시간 이내”를 각각 “8시간”으로 하고, 같은 란의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의 교육대상자

의 교육시간란 중 “8시간 이내”를 “8시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라목 중 “별표 13”을 “별표 13 V”로 하고, 같은 뒤쪽 제2호 및 제8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순찰자”를 “순찰차”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라목 중 “별표 13”을 “별표 13 V”로 하고, 같은 뒤쪽 제4호 중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중”을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중”으로 하며, 같은 뒤쪽 제5호 중 “설계도서중”을 “설계도서 중”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3호 중 “원통중형식”을 “원통세로형식”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중 “5일”을 “3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3일”을 “1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고팅관리기술자성명”을 “코팅관리기술자성명”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중형”을 “세로형”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중 “형태 가로형 중형”을 “형태 가로형 세로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Ⅲ 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 결과의 통보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7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송취급소의 보호설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 후단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5 III 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및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실무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	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	-----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것을 말한다.		-----		
1. <u>과요오드산염류</u>		-----		
2. <u>과요오드산</u>		-----		
3. <u>크롭</u> , 납 또는 <u>요오드</u> 의 산화		-----		
물		-----		
4. · 5. (생 략)		-----		
6. <u>염소화이소시아눌산</u>		-----		
7. · 8. (생 략)		-----		
② · ③ (생 략)		-----		
④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	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		
하는 것”이라 함은 <u>할로젠간화</u>		-----		
<u>합물</u> 을 말한다.		-----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	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	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	청) -----		
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primary-ruled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which are commonly used in elementary school writing practice to guide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providing a template for handwriting exercises.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present.

1. ~ 6. (현행과 같음)

7. 원통세로
형식 해당

반에 관한 자료

8. ~ 10. (생략)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에 따라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완공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기술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완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

8. ~ 10. (현행과 같음)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 -

-----(영 제22조제2항제2호-

-----.

-----.

-----.

1. ~ 3. (현행과 같음)

②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이 -----

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접수일시·검사일
 ·검사번호·검사자·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
 재한 완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
 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46조(화재안전기준의 적용) 제
 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에 규정된 기준 외에
 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
 준에 따른다.

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
 의 특례) 염소산염류·과염소산
 염류·질산염류·유황·철분·
 금속분·마그네슘·질산에스테
 르류·니트로화합물 중 「총포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
 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대해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6조(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 화재안전기
 준(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소
 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포
 함한다)---.

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
 의 특례) 염소산염류·과염소산
 염류·질산염류·황·철분·금
 속분·마그네슘·질산에스테르류
 ·나이트로화합물 -----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별 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 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⑥ (생 략)	----- ----- -----. ⑥ (현행과 같음)
---	---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8. ~ 10. (생략)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제9조에 따라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완공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기술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완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

----- 원통세로
형식-----

----- 해당 -----

8. ~ 10. (현행과 같음)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 -

----- (영 제22조제2항제2호

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접수일시·검사일·검사번호·검사자·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 소화설비·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46조(화재안전기준의 적용)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에 규정된 기준 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1. ~ 3. (현행과 같음)

②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이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 -----
----- 피난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6조(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를」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
른다.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⑥ (생략)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 ④ (생략)

⑤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별

----- 화재안전기준(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내
진설계기준을 포함한다)---.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일 전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신청자 및 소망
서장-----

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 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⑥ (생 략)	----- -----. ⑥ (현행과 같음)
--	-------------------------------